

용인시 도시개발 조례

제정 2002. 6. 15 조례 제 401호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741호
전부 개정 2009. 4. 24 조례 제 1010호
일부 개정 2012. 12. 11 조례 제 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 개정 2017. 10. 2 조례 제 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 개정 2017. 11. 6 조례 제 1721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11. 6>

1. “도시개발구역”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 2. “도시개발사업”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· 상업 · 산업 · 유통 · 정보통신 · 생태 · 문화 ·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· 상업 · 산업 · 유통 · 정보통신 · 생태 · 문화 ·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, 집행,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

제4조(공청회 개최방법 등) ① 법 제7조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해당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홈페이지, 해당 구청 및 읍·면사무소·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로 대신 할 수 있다.

제5조(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도시 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6조(과소토지의 기준) 영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약,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.

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

제7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용인시 도시 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제8조(특별회계의 재원)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도록

한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9조(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)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·관리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11. 6>

1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
2.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용자
3. 시가 시행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

4.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

5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,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
6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
7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
8.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

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11. 6>

1.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

가.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

2.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

가.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

3.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·연구비

4.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

④ 특별회계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11. 6>

1. 시장이 시행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
 2.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
 - 가. 도시개발사업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
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비
- ⑤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「신탁업법」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.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7. 11. 6>
- ⑥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, 징수관은 시의 도시개발업무담당 실·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- ⑦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- ⑧ 시장은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,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어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1. 기금의 운영규모
 2. 당해 회계연도 용자계획
 3. 기금의 수입, 지출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제10조(융자조건) ① 융자금의 이율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-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,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용자기간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되어,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- ③ 융자는 시와 시금고가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.
- ④ 용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연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

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⑤ 삭제 <2017. 11. 6>

제11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, 부위원장은 도시개발(특별회계)업무담당 실·국장,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담당관·과장, 회계업무담당 담당관·과장, 2명 이내의 용인시의회 의원,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. <개정 2017. 10. 2, 2017. 11. 6>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순위 결정 및 용자 배분
2. 제10조 제2항의 용도 외 사용여부
3.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1, 2017. 11. 6>

제13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·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

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법률 제6252호 「토지구획 정리사업

법」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”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.

②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로 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시행 60일 이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토지구획 정리사업법」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4조(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

개발행위허가(개발행위허가가 의제가 되는 허가·인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(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·인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741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·승인·심의·허가·인가·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101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·승인·심의·허가·인가·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

조례에 의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「용인시 도시개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⑩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11. 6 조례 제17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